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환경한림원 법적근거 마련 등 〉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91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한국환경한림원 법적근거 신설	3
2. 한국환경한림원 등 동일·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7
3. 부칙	10
※ 참고자료	13
1. 한국환경한림원 개요	13
2. 타 분야 한림원과 비교	15

I. 제안경위

2025년 2월 7일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생태계 등 환경 관련 현안들이 다양해지고 문제의 양상 또한 복잡해지고 있음.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바 현재 환경정책토론·현안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한국환경한림원 법적 근거 신설

개정안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환경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고 환경분야의 융합적 학술연구와 정책적인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환경한림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59조의2(한국환경한림원) ① 환경분야 학술연구의 효율적 추진과 석학(碩學)의 교류·활용을 위하여 한국환경한림원(이하 “환경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u> <u>② 환경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u> <u>③ 환경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 <u>1. 환경분야 연구기반 조성 및 환경현안 대응에 필요한 조사·연구</u> <u>2. 환경분야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정부기관 간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사업</u> <u>3. 환경분야 정책자문 및 홍보</u>

현행	개정안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환경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환경한림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한국환경한림원(이하 “환경한림원”이라 한다)이 환경분야 학술연구 및 교류협력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한림원의 법적 성격, 사업 범위, 예산지원 근거,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59조의2 조항별 구체적 내용]

조항	내용
안 제59조의2제1항	한국환경한림원 근거 마련
안 제59조의2제2항	법적 성격(법인)
안 제59조의2제3항	사업 범위(환경분야 연구기반 조성, 현안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정책자문 및 홍보 등)
안 제59조의2제4항	예산 지원 근거
안 제59조의2제5항	유사명칭 사용 금지
안 제59조의2제6항	사단법인 준용 규정
안 제59조의2제7항	대통령령 위임 근거

환경한림원은 환경 분야 학술 연구, 정책진흥 기반 조성, 전문가 교류 등을 위하여 2011년 11월 설립된 사단법인임(참고자료1).

환경한림원의 회원¹⁾은 환경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환경분야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공헌하거나 환경 관련 산업분야에서 기여한 자 등으로 구성되고, 정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가진 7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²⁾, 환경한림원은 환경리더스 포럼, 환경원탁토론회의, 정책보고서 발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³⁾하고 있음.

환경한림원과 유사한 학술단체로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⁴⁾, 한국공학

1) 현재 환경한림원은 이사장, 회장, 정회원 183명, 원로회원 82, 일반회원 67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한국환경한림원 정관」 제6조 (회원의 자격) 1. 회원의 자격은 환경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한다.

1) 환경분야 연구 및 그 결과의 정책개발, 실용화 및 보급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

2) 환경관련 산업분야에서 선구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대한 기여를 한 자

3) 환경관련 교육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공헌을 한 자

2. 정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가진 7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외국인회원은 대한민국 국민 이외의 사람으로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원로회원 및 일반회원에 대한 사항은 회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

5. 단체회원은 환경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으로 하며 단체 회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따로 정한다.

3) 환경한림원은 공학, 보건, 생태·이학, 인문·사회과학, 정책·산업 분야의 5개 분과를 두고, 환경분야의 다학제간 융합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한림원⁵⁾, 대한민국의학한림원⁶⁾ 등이 있고, 이러한 단체들은 개별법에 설립목적, 사업, 예산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참고자료2), 환경한림원은 환경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단체로 위 단체들과

-
-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①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 석학(碩學)의 교류와 활용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2. 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협력사업
 3.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4.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5.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정책자문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 ④ 정부는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0조(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① 공학 및 산업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공학·산업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공학한림원을 설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이하 "한국공학한림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수 공학·산업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기업·대학·연구소 및 업종별 단체 간의 유기적 연계체제의 구축사업
 3. 공학 및 기술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 ③ 한국공학한림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한국공학한림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 6) 「의료법」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①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 전문분야(이하 이 조에서 "의학등"이라 한다)의 연구·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이 조에서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학등의 연구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2. 의학등의 분야별 중장기 연구 기획 및 건의
 3. 의학등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4. 의학등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자문 및 홍보
 5. 보건의료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6.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⑦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환경한림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한림원의 지위를 강화하고, 환경 분야에서의 역할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환경 분야 연구 및 정책자문, 전문가 교류 등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각 분야별 한림원의 사업 내용]

구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KAST)	한국공학한림원 (NAEK)	한국환경한림원 (개정안) (KAES)	대한민국의학한림원 (NAMOK)
사업 내용	○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정책자문		○ 환경분야 연구기반 조성 및 환경현안 대응에 필요한 조사·연구 ○ 환경분야 정책자문 및 홍보	○ 의학등의 연구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 의학등 및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자문 및 홍보 ○ 의학등의 분야별 중장기 연구 기획 및 건의
	○ 외국 과학기술 한림원과의 교류 협력사업	○ 공학 및 기술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 기업·대학·연구소 및 업종별 단체 간의 유기적 연계체제의 구축사업	○ 환경분야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정부기관 간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 의학등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 우수 공학·산업 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 보건의료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또는 위탁한 사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2. 한국환경한림원 등 동일·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개정안은 한국환경한림원, 한국환경보전원 등과 동일·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2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9조제9항을 위반하여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5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환경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7)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7)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의 동일·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조항인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한국환경보전원과 한국환경한림원에 대하여 동 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환경한림원 등과 유사한 한국과학기술한림원⁸⁾, 대한민국의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④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보조금, 제5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금·수수료,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차입금,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출연금·보조금의 지급·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자(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인 등 대국민 환경교육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의 강화·지원사업
 2. 수질개선을 위한 수계별 매수토지 등의 관리·활용, 수변생태계 복원, 수질·유량조사 등의 물환경보전사업
 3.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
 4.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조사·검사·평가·연구사업
 5.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의 진단·개선·지원사업
 6. 환경보전 또는 기후변화 등에 관한 홍보사업 및 국내외 교류·협력·지원사업
 7.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⑥ 환경부장관은 보전원의 운영·사업 등을 지도·감독하고, 보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예산 및 사업실적·결산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보전원의 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상임임원으로서 보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⑧ 보전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⑨ 이 법에 따른 보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⑩ 보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림원⁹⁾ 등 학술단체의 경우에도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개정안 제62조제1항제1호 중 ‘한국한정보전원’은 ‘한국환정보전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1. 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

9) 「의료법」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부칙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부칙 제1조), 한국환경한림원의 법인격 변화에 따른 재산·권리·의무 승계 등의 절차 효율화를 위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부칙 제2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환경한림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총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환경한림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정안
	<u>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u> <u>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u> <u>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를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u> <u>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회원 및 임직원은 신법인의 회원 및 임직원으로 보며, 회원 및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u> <u>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u>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규정하고, 구법인의 총회 의결을 통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소관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을 신법인이 승계하고,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등기부 등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로는 신법인의 명의로 하고, 회원 및 임직원의 임기,

구법인의 법률행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가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안 부칙 제2조제3항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처리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사 입법례¹⁰⁾를 고려하여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3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부칙<제18900호, 2022.6.10.>

제2조(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총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를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참고1

한국환경한림원 개요

□ 개요

- **(설립목적)** 환경분야 학술연구, 전문가 교류, 통찰력 있는 정책 제안을 통해 다양한 환경문제의 해결, 환경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 **(설립시기)** 2011년 11월
- **(구성)** 이사장 김명자, 회장 허 탁, 정회원 180명(만 70세 이하), 원로회원 93명, 일반회원 80명



□ 주요 사업 및 추진 예정 사업

- 환경분야 연구기반 조성 및 환경현안 대응에 필요한 조사·연구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 중	환경리더스포럼	국가적 환경 현안에 대해 최고정책입안자, 산업계 최고경영인, 사회단체 대표 및 최고 석학들간의 토론회로 '12년이후 총 67회 개최
	환경원탁토론회의	산학연관 각 분야 주요 전문가들과 환경 정책 추진현황 및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 '19년이후 총 7회 개최
	정책보고서 발간	주요 환경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환경정책 방향제시, 연 1회 발간

○ 우수 환경인력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 중	환경한림원 뉴스레터 발간	주요 환경정책·이슈, 회원 동향, 환경 관련 저서/논문 등 소개
시행 예정	우수 환경인 시상식 개최	환경분야에 큰 기여를 한 우수 환경인을 선정하여 시상,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심의를 거쳐 선정
	환경한림원 분과위원회 활동지원	분과위원회별(공학, 보건, 생태이학, 인문 사회과학, 정책산업분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의제발굴, 원탁회의 등 개최
	젊은 환경인 상 시상식 개최	우수한 성과를 이룬 환경 관련 전공 대학생, 대학원생 등을 선정하여 “젊은 환경인상”을 시상

○ 환경분야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 중	산업계 및 연구계 현장탐방	회원 대상 환경 관련 현장·기관 탐방 및 관련 주제로 세미나 개최
시행 예정	환경관련 학과 및 연구소 소개	국립환경과학원, 기업체 등 다양한 환경 관련 기관과 협력
	해외기관 교류	대만(중화민국) Academia Sinica EU Academia Eurpoaea 교류 추진
	국제 심포지엄	분과위원회 주도로 주요 환경이슈별 국제 심포지엄 개최

○ 환경분야 정책자문 및 홍보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 중	환경정책 심포지엄	산·학·연·민·관 전문가들과 주요 환경정책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공개토론, '12년 이후 총 25회 개최
시행 예정	‘환경한림원 제안’ 발간	주요 환경이슈에 대한 정책제안

○ 환경부 위탁 사업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 중	미래지향적인 환경정책 방향 제시 (환경부 용역 수행)	환경정책 발전포럼 개최 등을 통한 정책 방향 제안

참고2

타 분야 한림원과 비교

구분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한국공학 한림원	대한민국의학 한림원	한국환경한림원
설립 근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산업기술혁신촉진 법 제40조	의료법 제52조의2	민법 제32조
설립 목적	과학기술의 진흥과 창달에 기여	국가의 창조적 공학기술 개발과 지속적 발전에 기여	의학의 지속적인 진흥 창달과 선진화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 학문적 발전, 환경가치 향상과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
대표 임원	• 원장: 정진호(서울대 약학과 명예교수) • 이사장: 김광용(인하대 기계공학과 명예교수)	• 원장: 윤의준(서울대 특임교수) • 이사장: 신학철(LG화학 부회장)	• 원장: 한상원(연세대 의과대 명예교수)	• 회장: 허탁(건국대학교 교수) • 이사장: 김명자(KAIST 이사장)
회원수	1,073명	1,437명	651명	353명
예산 현황	87 억원('23) (정부지원 40, 수탁 17, 과학기술유공자예우·지원 12, 그 외 회비·임대·기부 수익 등)	57 억원('23) (정부지원 14, 회비 25, 기부금 10, 그 외 수탁·임대 수익 등)	17 억원('22) (정부지원 3.6, 기업출연 6, 그 외 수탁·회비·수익 등)	2.5 억원('24) (기부금 1.6, 회비 0.5, 수탁 0.4)
창립/ 법인등록	'94/'95	'94/'95	'04/'07	'11/'11
법정 법인화	'05	'94	'15	(現 비영리민간단체)
구성	5개 학부 (정책/이학/공학/ 농수산학/의약학)	8개분과 (전기전자/기계/건설환경/화학생물/재료자원/기술경영정책/컴퓨팅/바이오메디컬)	의학분야별로 11개 분회	5개 분과 (공학/보건/생태이학/인문사회과학/정책산업)

※ 타 분야 한림원 예산현황은 해당 한림원 홈페이지 재정공시 등을 참조하여 작성